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86 호 2017. 7. 21(금)

## 고 시

제2017 - 6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1
제2017 - 71호	남해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확정·고시	5
제2017 - 72호	도로명 주소 고시	6
제2017 - 74호	군관리계획(창선생활체육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

## 공 고

제2017 - 68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12
제2017 - 718호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8
제2017 - 719호	남해군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3
제2017 - 73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32
제2017 - 73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39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69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화천에 대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역사·문화와 연계한 하천정비를 통해 복합 친수하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조성

나. 개요

읍·면	하천종류	하천명	하천정비구간		사업량	비고
			기점	종점		
삼동면	지방하천	화천	삼동면 봉화리 (내산저수지)	삼동면 봉화리 (삼화천합류부)	○ 고향의 강 조성사업 L = 5.3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일원

# 남 해 군 공 보

(2)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나. 성 명 : 남해군수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13. 09. ~ 2015. 07

- 변경 : 2013. 11. ~ 2018.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과 소유자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명세 : 붙임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19,664	560	606	1,167	10,000	7,331				당초
	18,325	560	606	1,167	833	3,333	2,632	6,667	2,527	변경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하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	화천	지방하천	삼동면 봉화리 (내산저수지)	삼동면 동천리 (남해안 하구)		7.5	30~45	371,859	경남 제271호 (1982.11.29.)	
변경	5	화천	지방하천	삼동면 봉화리 (내산저수지)	삼동면 동천리 (남해안 하구)		7.5	30~45	407,066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화천	· 면적변경 (증 35,207m <sup>2</sup> ) (A=371,859m <sup>2</sup> → 407,066m <sup>2</sup> )	·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하천면적 변경

9.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처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4

# 남 해 군 공 보

(4)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사군	읍면	리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353.8	1353.8					
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77-3	답	404	404	박○용	남해군 삼동면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46-1	답	36	36	이○순	남해군 삼동면 ***			미등기
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81-3	답	190	190	김○현	남해군 삼동면 ***			
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85	답	43	43	김○연	남해군 삼동면 ***			
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342-4	대	59	59	이○이	남해군 삼동면 ***			
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376	천	522	522	송○조	남해군 삼동면 ***			미등기
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15-2	임	24	24	김○신	남해군 삼동면 ***			미등기
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60-1	답	75.8	75.8	김○한	남해군 삼동면 ***			

남해군 고시 제2017 - 71호

### 남해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확정·고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남해군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35조 6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3일

남 해 군 수

고 시 명 : 남해군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개 요

- 가. 법적근거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
- 나. 계획년도 : 2017년 ~ 2021년(5년)
- 다. 계획범위 : 남해군 전역

3. 주요 내용

- 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나. 보행교통 개선 기본 방향
- 나. 보행교통 문제점 및 지역별 개선안
- 라.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

4. 열 람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교통지도팀(☎ 055-860-3455)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7 - 7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06 외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1-1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0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87-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464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7-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642-86 (쌍기성삼조로(결정필반))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277-2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31-3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6-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58-3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124, 257, 257-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139-13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84-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5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304-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 377-12	20090427	임금이 둘러온 고개라는 고실고개가 있던 도로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304-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 377-14	20090427	임금이 둘러온 고개라는 고실고개가 있던 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보리임로 290	20090427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백양기도를 드렸다는 금산의 임구에서 보리임까지 연결되는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금음리 744, 768-7, 769-1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 667	20090427	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문덕리 416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 780	20090427	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40-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329-30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룡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작가들이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29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22	20090427	창선면 소재지를 지나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13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95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라, 신라황폐후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팔산리 1079, 1069-2, 1076, 107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23-2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라, 신라황폐후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7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비란리 478-11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고실로 229번길 23-47	20090427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리 140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음로 122번길 10	20091023	남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원리 759	경상남도 남해군 남서대로 1202번길 19-30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실천리 659-7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남해대로 2970번길 24-48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1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628번길 4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덕신리 1685-19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남해대로 4033번길 46-1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덕신리 1630	경상남도 남해군 실천면 남해대로 4033번길 6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4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37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2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499-3, 2499-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442번길 47	20100915	삼이로 442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3020, 2475-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442번길 45-23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0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69번길 41	20091023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6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어리 565-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어로 356번길 29-2	20090427	양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31번길 6-15	20091023	창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9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53번길 13-2	20091023	창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93-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53번길 13-6	20091023	창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18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호도길 29-11	20090427	미조리에 있는 유인도, 섬의 형상이 뱀이 달려오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뱀섬이라고도 함
3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266-1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96번길 31-1	20090427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7 - 74호

## 군관리계획(창선생활체육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일원의 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해군계획시설(창선생활체육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 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 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창선생활체육공원) 사업
- 명 칭 :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남 해 군 공 보

(10)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 m <sup>2</sup> )			비 고
		기 정 ( m <sup>2</sup> )	변 경 ( m <sup>2</sup> )	변경 후(m <sup>2</sup> )	
총	계	51,898	감)2,218	49,680	
체 육 시 설 용 지	소 계	37,978	-	37,978	
	체 육 시 설	27,862	-	27,862	
	주 차 장	2,790		2,790	
	녹 지	7,326	-	7,326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8,700	-	8,700	
	도 로	4,490	-	4,490	
	주 차 장	4,210	감)2,218	1,992	
녹 지	용 지	5,220	-	5,22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체육시설사업소)
- 주 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상신리	1		도	5,305	55		국(국토교통부)
2	"	1	-7	답	19,900	3,771		남 해 군
3	"	1	-12	답	50	50		남 해 군
4	"	1	-13	답	1,510	771		남 해 군
5	"	1	-17	도	201	7		남 해 군
6	"	1	-19	답	36	1		남 해 군
7	"	2	-1	전	2,148	504		남 해 군
8	"	2	-2	구	2,197	1,775		국(국토교통부)
9	"	2	-4	잡	72	72		남 해 군
10	"	5	-2	도	138	138		국(국토교통부)
11	"	5	-3	답	418	418	상신리 ***	김 0 남
12	"	5	-4	답	1,030	1,030	상신리 ***	박 0 영
13	"	5	-9	수	5	5		국(국토교통부)
14	"	11		구	2,623	51		국(농림축산식품부)
15	"	13		구	1,949	515		국(농림축산식품부)
16	"	13	-1	전	801	801		남 해 군
17	"	648		천	24,588	13		국(국토교통부)
18	상죽리	10	-3	답	13,241	1,297		남 해 군
19	"	10	-4	답	1,886	1,776		남 해 군
20	"	10	-7	답	987	43		남 해 군
21	"	10	-8	구	354	113		남 해 군
22	"	10	-9	답	22,642	20,728		남 해 군
23	"	10	-10	답	559	559		남 해 군
24	"	10	-11	답	773	773		남 해 군
25	"	10	-12	답	721	721		남 해 군
26	"	10	-14	제	443	163		남 해 군
27	"	10	-15	답	525	525		남 해 군
28	"	10	-18	답	4,818	4,818		남 해 군
29	"	10	-19	답	1,516	1,516		남 해 군
30	"	10	-20	구	454	421		남 해 군
31	"	10	-21	답	7,609	3,418		남 해 군
32	"	10	-22	답	692	692		남 해 군
33	"	10	-23	답	115	115		남 해 군
34	"	10	-24	구	67	67		남 해 군
35	"	10	-27	잡	8,000	1,958		남 해 군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683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 구간		총연장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삼동	농어촌 도로	211호	삼동면 물건리 614-11	삼동면 물건리 664-15	L=871m (A=15,599m <sup>2</sup> )	-	6.5	5.5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저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47	•노선신설 B=6.5m, L=871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2)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47	6.5	국지 도로	871	삼동면 물건리 614-11	삼동면 물건리 664-15	일반 도로	-	-	농어촌도로 (삼동211호선)

3.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삼동211호선) 사업
- 명칭 : 농어촌도로(삼동면211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15,599㎡
- 규모 : B=6.5m, L=871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2017. 5.
- 사업의 준공일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고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 남 해 군 공 보

(14)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1	562-9	주	842	3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6	562-10	대	60	4		박만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6			
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6	562-11	대	60	8		박만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6			
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14-3	614-13	전	500	119		우석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54			
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14-4	614-14	전	686	3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14-6		도	79	79		단우태 민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1			
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2-7		도	38	38		우준성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0			
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2-5		도	269	269		우태선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1			
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8	558-3	전	1,752	1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6-3	556-17	전	1,103	6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6	556-16	대	924	70		주효식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08-15			
1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5-5	555-11	전	1,649	427		최동범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71			
1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5-8	555-12	전	990	5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43		임	405	405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41-1	산141-10	임	7,339	2,700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13		전	327	327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14	628-39	전	807	34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7	628-37	전	2,159	59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10	628-38	전	1,113	46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8-4	산138-17	임	6,302	950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0-4	630-10	전	876	35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7월 21일

제 586 호 (15)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물건리											
2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0-2	630-8	전	1,012	21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8-2	산138-15	임	9,124	1,29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9		임	198	19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40		임	198	19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0-3	630-9	전	1,565	8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8-3	산138-16	임	8,430	34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1-4	631-17	전	2,985	11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1-3	631-16	전	1,035	429	231/1085 804/1085	남해군 임종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통영시 평인일주로82 103동308호(주공A)			
3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1-2	631-15	전	432	31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4-4		답	70	70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43	643-1	전	301	1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44-2		답	127	127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44	644-3	답	365	17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44-1	644-4	답	311	5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2-1	622-11	전	422	107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2-3	622-12	전	141	28		우석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54			
3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22		도	180	180		신익균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83			
3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18		도	88	88		김덕련	부산시 사하구 과장동 446-22			
4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21		도	185	185		김덕련	부산시 사하구 과장동 446-22			
4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1-10	631-18	전	437	238		김경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70-6			
4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32	628-42	전	196	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3	남해군	628-3	628-36	전	868	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 남 해 군 공 보

(16)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삼동면건리								망운로 9번길 12				
44	남해군삼동면건리	628-16	628-40	전	1,094	1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5	남해군삼동면건리		628-41	전		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6	남해군삼동면건리	629-3	629-4	전	919	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7	남해군삼동면건리	630-6	630-11	전	279	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8	남해군삼동면건리	631-12	631-19	전	523	5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9	남해군삼동면건리	631-13	631-20	전	189	5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0	남해군삼동면건리	631-1	631-14	전	1,048	7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1	남해군삼동면건리	633	633-1	전	307	6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2	남해군삼동면건리	634-1	634-5	답	1,802	7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3	남해군삼동면건리	634-3	634-6	답	680	20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4	남해군삼동면건리	642	642-2	답	426	31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5	남해군삼동면건리	598-1	598-5	장	3,202	4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6	남해군삼동면건리	598-2	598-6	답	1,257	1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7	남해군삼동면건리	597	597-1	답	840	5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8	남해군삼동면건리	646-1		답	453	45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9	남해군삼동면건리	647	647-1	양	1,954	23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0	남해군삼동면건리	648	648-1	답	1,200	16	1/4 1/4 1/4 1/4	최봉실 최양운 남해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77 607동 1005호(주공A) 서울 노원구 증계동602 바른드림힐A101동703호 상남 분당구 재정로166번길355 15동1701(양자마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1	남해군삼동면건리	646-2		답	327	327	49/63 7/63 7/63	이희찬 이도길 남해군	부산 북구 시랑로24번가길 21, 301호(류정말래)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37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국 민 강 보 공 단	원주시삼 보로32	입류
62	남해군삼동면	559-5		도	129	9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남 해 군 공 보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물건리											
6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8-1		도	19	1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8-2		도	37	37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6-9		도	153	15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6-8		도	38	3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5-6		도	8	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5-7		도	4	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6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19		도	119	119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7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28-20		도	56	27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7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56-10		도	258	25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7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64-15		도	3,406	16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7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36-1	산136-6	임	10,909	908		국 (기획재 정부)				
7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67		도	2075	54		국 (건설교 통부)				
7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68		도	1220	186		국 (건설교 통부)				
7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14-11		도	3	3		국 (건설교 통부)				
	계				91,824	15,599						

남해군 공고 제2017 - 718호

##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 결정 및 통보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 보고

나. 도선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검사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전화:055-860-3443, 팩스 055-860-3708, 이메일 maincrazy@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 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선박의 교체 및 수리
2.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세 도선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등) ① 영세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에서 정한 각종 검사 등에 대하여는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검사와 면세유 수급 등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정요구나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719호

### 남해군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택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주택조례안

2. 개정이유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후 공동주택의 정의를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규정(안 제2조)
- 공동주택 자문위원회를 두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방안,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심의(안 제5조)
- 자문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여 선출(안 제6조)
-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안 제11조)
-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안 제14조)
- 기금의 용도는 안전진단 및 안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경비, 그 밖에 심의를 거친 사항(안 제16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21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안 제26조)
-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주민운동시설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세대에는 일정 면적을 설치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27조)
- 주택법에 따른 인증제도에 따라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견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2.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 방안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군수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두며,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으로 공무원 외에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2조에 따른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남해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직원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는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에서 제16조 각 호의 용도로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으로 남해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명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6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28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제도에 따라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730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고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7. 7. 17 ~ 8. 6(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7. 7. 17 ~ 8. 6(20일간)

4.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727)
- 다. 제출기한 : 2017년 8월 6일
- 라. 보내실 곳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마. 문 의 처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4
-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아산4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외 3필지 일원	붕괴위험	D	5,8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아산5	남해읍 아산리204-1번지 외 3필지일원	붕괴위험	D	7,900	
북변2	남해읍 북변리 산10-6번지 일원	붕괴위험	D	3,500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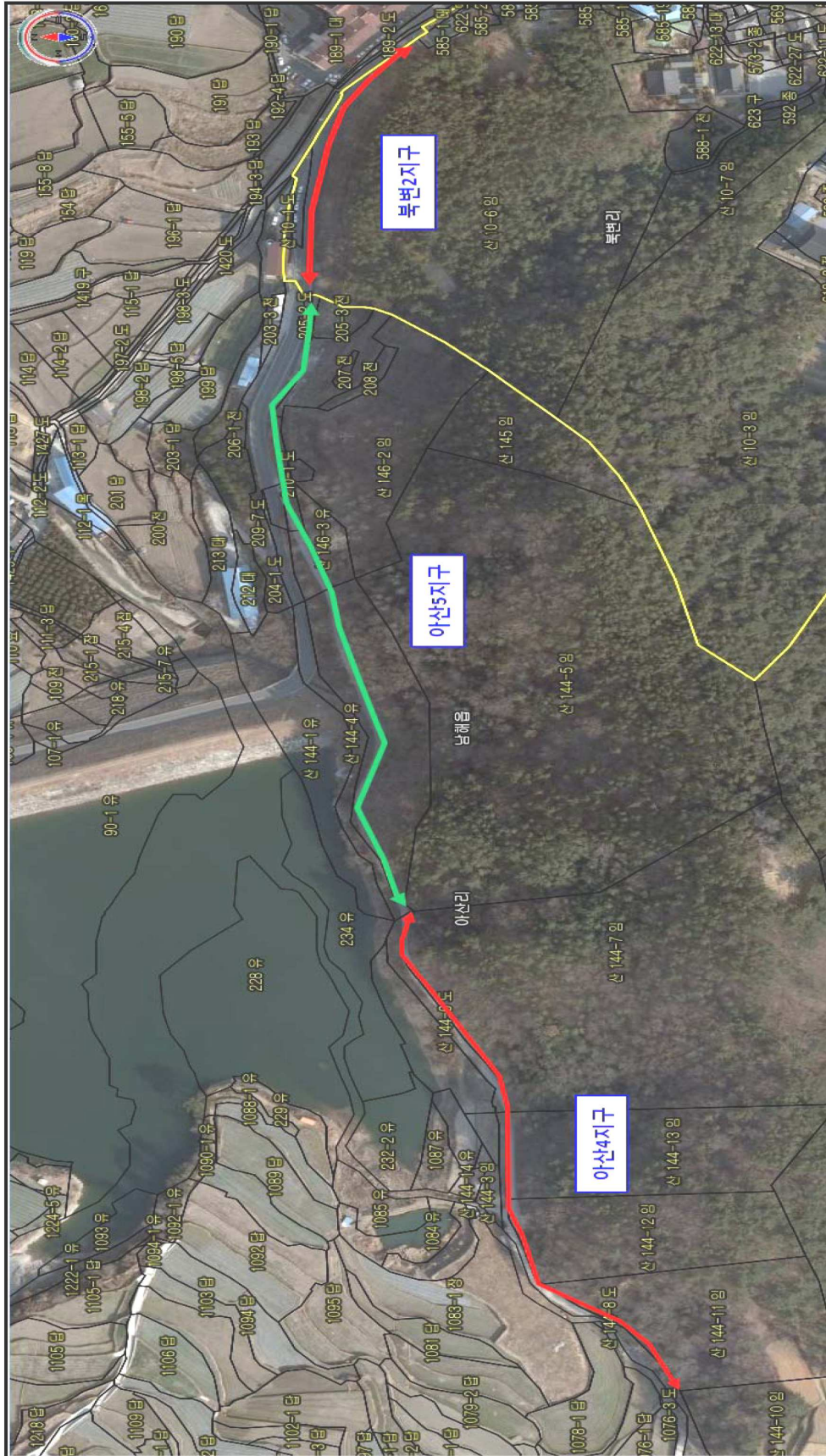
-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낙석방지책 등 급경사지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급경사지(아산4, 아산5, 복변2지구) 전체 현황



# 아산4지구 위치도



# 아산5지구 위치도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제출 내 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734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남 해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 구간		총연장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설천	농어촌 도로	206호	설천면 문항리 751-7	설천면 문항리 1399-5	L=1,488m (A=16,783.3㎡)	-	8	8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코저 함 (L=863m 추가지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95	소로2-95	•노선변경(신설) B=8m, L=1,488m(863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으로 863m 추가 (변경)결정하고자 함

2)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95	8	국지 도로	1,488	설천면 문항리 751-7	설천면 문항리 1399-5	일반 도로	-	2015.2.6.	농어촌도로 (설천206호선)

3.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설천206호선) 사업
- 명칭 : 농어촌도로(설천면20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금회 면적 및 규모)

- 면적 : 16,783.3㎡(11,913.3㎡)
- 규모 : B=8m(8m), L=1,488m(863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2017. 5.
- 사업의 준공일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고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7월 21일

제 586 호 (41)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적 (m <sup>2</sup> )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1	남해군설천면문항리	620-2	620-11	전	185	97	63/378	하정선	부산 남구 수영로132번길 62 (대연동)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2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8/378	하성관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49 C동 106호 (남천동,기영주택)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3	남해군설천면문항리						63/378	하정희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47 나동 106호 (남천동,기영주택)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4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4/378	전현지	함안군 칠원면 원서로89-21 103동 1001호 (칠원동성@)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5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4/378	전재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8, 404호(광안동 명성마이빌)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6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4/378	전준영	함안군 칠원면 원서로 89-21, 103동 1001호 (칠원동성@)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7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1/378	전호진	함안군 칠원면 원서로 89-21, 103동 1001호 (칠원동성@)	주식회사케이알앤씨 국(마산세무서)		대여금등 반환청구권 압류
8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71/37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9	남해군설천면문항리	618	618-3	묘	348	65		하경원	미등기			
10	남해군설천면문항리	619		전	99	99		관촌만억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662			
11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84	584-2	답	3,204	9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2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16-1	516-5	답	767	495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3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16	516-4	답	1,213	1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4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15-1	515-3	유	1,428	9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5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13-1	513-13	전	965	195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16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82	582-2	답	1,578	15	1/6	하정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734			
17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하정안	부산 동래구 연산동 1135-81			
18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허준생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4-47			
19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허준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27-18			
20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남 해 군 공 보

(42) 제 586 호

2017년 7월 21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공유분	성명 또는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21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83	583-2	답	452	177	1/6	하정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734			
22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하정안	부산 동래구 연산동 1135-81			
23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하준생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4-47			
24	남해군설천면문항리						1/6	하준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27-18			
25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6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9-1	509-3	전	413	275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7	남해군설천면문항리	422-1	422-4	답	2,912	830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8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71-14	271-18	답	2,230	50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9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71-13	271-17	답	1,348	30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0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5	505-2	답	803	3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1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4	504-3	답	1,441	643		장상우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49-3	농협은행주식회사 (남해군지부)		근저당
32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4-1		답	731	731		장상우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73			
33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3-1		전	136	13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4	남해군설천면문항리	산6-1	산6-11	임	11,868	62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5	남해군설천면문항리	산6-1	산6-9	임	11,868	1,22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6	남해군설천면문항리	산8-1	산8-7	임	7,406	859		정영미	경기 광명시 소하로 162, 714동 501호(소하동, 휴먼시아)			
37	남해군설천면문항리	503	503-3	전	347	138		이상순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66-7	새남해농업협동조합 (설천지점)		근저당
38	남해군설천면문항리	산12-1	산12-9	임	6,148	37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9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75-2		천	87	6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0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75-1		도	499	346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1	남해군설천면문항리	275-3		도	163	63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명칭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42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079		도	3,389	375		국(농림 수산부)				
43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078		구	2,044	55		국(농림 수산부)				
44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075		구	3,217	556		국(농림 수산부)				
45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275		계	196	196		국(농림 수산부)				
46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272		구	1,426	52		국(농림 수산부)				
47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074		도	2,385	1,123		국(농림 수산부)				
48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400		도	301	64		국(건설 부)				
49	남해군 설천향 문항리	1399-5		도	2,346	25		국(건설 교통부)				
	계				73,943	10,948						